

□ 벌칙(하천법 제93조 내지 제97조)

위반행위	법	벌칙
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의 장애를 일으킨 자	하천법 제93조	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·모래·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	하천법 제94조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·보수를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,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법 제33조제1항(제5호의 토석·모래·자갈 채취 제외)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(제6호 및 제7호를 제외)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	하천법 제95조	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제1항 또는 법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	하천법 제96조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제93조부터 제96조까지를 위반한 개인(대리인, 사용자, 종업원)과 그가 속한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한다.	하천법 제97조	법인, 개인 양벌 *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

□ 과태료(하천법 제98조, 하천법 시행령 제107조 별표5)

- 기타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)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2)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)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	법 제98조제3항제1호	30만원 40만원 50만원		
나. 삭제 <2017.7.17.>				
다.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 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비치하지 않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	법 제98조제3항제3호	30만원	40만원	60만원
라. 삭제 <2017.7.17.>				
마.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	법 제98조제2항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바.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·보관하지 않거나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,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경우	법 제98조제3항제5호	30만원	40만원	50만원
사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·일시사용 또는 죽목·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98조제3항제6호	50만원	60만원	80만원
아.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	법 제98조제1항	300만원	400만원	500만원
자.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98조제3항제7호	50만원	60만원	80만원